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회 계 과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4차)
(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·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신축)

구 미 시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4차)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반도체 공정의 핵심 공간인 ‘챔버’ 소재·부품의 국산화 및 공급망 안정,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조와 검증, 기술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‘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·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’ 구축(산업부 공모사업)

2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○ 위　　치 : 구미시 공단동 282,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

○ 대　　상 : 건물 1개동(지상 2층) / 연면적 3,000㎡

○ 기준가격 : 170.7억원(공사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설부대비 등)

○ 사 업 비 : 40,000백만원(국 15,000 도 7,500 시 17,500)

○ 사업기간 : 2026 ~ 2030년(5년간)

○ 주요시설 : 장비구축공간, 클린룸, 기업지원공간, 공조·기계실 등

○ 추진현황

- 구미시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통과 : ‘26. 3. 30.
- 공모 선정 : ‘26. 5. 14.
- 전담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: ‘26. 5.
- 건축 기본계획 설계 : ‘26. 5. ~ 8.
- 중앙투자 심사의뢰서 제출(’26. 3차) : ‘26. 7. 2.
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: ‘26. 9. 1.

○ 향후추진계획

-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: '26. 10.
- 설계공모 : '26. 12.
- 실시설계 용역 : '27. 3.
- 착공 : '28. 4.
- 센터완공 및 개소 : '29. 6.

≪「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·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」≫

▸ 기 간 : 2026. 5. ~ 2030. 12.(56개월) ※ 공모선정 : 2026. 5. 14.
▸ 사 업 비 : 40,000백만원(국 15,000, 도 7,500, 시 17,500)
▸ 주관기관 : 한국세라믹기술원(KICET)
- 역할 : 제조 공정 장비, 설비(클린룸) 구축 및 운영관리
▸ 참여기관 :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반도체산업협회, 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역할 : 소재부품 분석장비 구축 및 운영, 시험분석 평가지원, 수요·공급 기업협력지원, 인프라 활용 지원, 대외홍보 역할
▸ 사업내용
- 센터구축 : 반도체 챔버용 소재·부품 특화 기술지원 센터 건축(연면적 3,000㎡)
- 장비구축 : 반도체 챔버용 핵심 소재·부품 제조·검증장비(약 44종, 클린룸) 등 구축
- 기술지원 : 시생산 공정기술 문제점 개선 및 전주기적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

3. 근거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○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4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 분	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	1건	3,000	17,070
	1.매입	토지 건물 기타			
	2.교환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1건	3,000	17,070

취득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매각 시기	사 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 량(㎡)					
계			3,000	17,070				
취득	건물	공단동 282	3,000	17,070	2029년	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·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	구미시	신축

위 치 도 및 조 감 도



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4차) 비용추계서

(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·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신축)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·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비용을 산정하였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6)	2차년도 (2027)	3차년도 (2028)	4차년도 (2029)	5차년도 (2030)	합계
세출	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·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	773	5,898	10,399	-	-	17,07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-	-	-	-	-	-
도 비	232	1,769	3,120	-	-	5,121
시 비	541	4,129	7,279	-	-	11,949
민 간	-	-	-	-	-	-
기 타	-	-	-	-	-	-
합 계	773	5,898	10,399	-	-	17,070

5. 부대의견

-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, 300mm웨이퍼 반도체 장비의 챔버 소재부품 시제품 제조 및 양산, 실증 전 기본 검증이 동시에 가능한 테스트베드 구축은 비수도권 최초이며 지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 인재의 지역 안착을 돕는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

6. 작성자

- 반도체방산과 반도체정책팀 윤효정(054-480-6032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금 액	산출내역	비 고
총 계		17,070		
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	공사비 (건축공사)	15,177	○ 5,059,000원 × 3,000㎡ = 15,177,000,000원	
	설계비	622	○ 설계용역(공사비의 4.10%) = 622,257,000원	
	감리비	1,236	○ 감리비(공사비의 8.14%) = 1,235,407,800원	
	시설부대비	35	○ 시설부대비(공사비의 0.23%) = 34,907,100	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~ 5. 생략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
7. ~ 11. 생략

② 생략

□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8조(중요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"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(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② ~ ④ 생략

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

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

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□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
제12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2.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

소 관 부 서		회 계 과 (반도체방산과)
입 안 자	과 장	임 응 건 (시 병 연)
	팀 장	전 유 향 (임 진 환)
	담 당 자	박 재 경 (480-5072) (윤 효 정) (480-6032)